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398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80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소298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5. 14.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소298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1. 6. 3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E은 원고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C·D·E 모두를 대리하여 2011. 7. 6. 원고·C·D·E 전부를 피고에 대한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1년제4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 당시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2012. 7.경 C 또는 원고에게 위 돈 1억 원을 수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잔존 채무 6,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지만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피고는 2015. 12. 11.경 E으로부터 3,7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중 1/5은 피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① 위 돈 3,7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 금액으로 수령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후 채무자들이 구상하거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경우 원고는 그 즉시 3,700만 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현재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위 돈의 입금으로 인하여 모든 채권관계는 정산한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 더 이상 이에 대한 청구 및 여타 채권 추심절차를 포기한다.

마. 피고는 D이 2014. 10. 31. 농업회사법인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3,000만 원을 공탁(공탁번호: 2014년 제9069호)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24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H)에서 2016. 4. 14.경 15,006,603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원고는 E에게 C을 양도한 상태여서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E과 그 아내 I(D의 대표자이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E은 원고에게 원고의 변제금 6,500만 원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피고가 이런 사정에 처해 있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금 1,500만 원 중 자신의 몫 3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전부 소멸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무가 소멸한 사정을 모르는 다른 채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나누기로 한 것이어서, 결국 사기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위 깨끗한 손(clean hands)의 원칙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내부적 부담 부분이 없어서 원고의 변제금 6,500만 원 전액을 E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거나 위 배당금 수령 당시 피고가 E 등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청구함이 마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박상준

판사차윤제